

울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157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1578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가단1175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온

담당변호사 곽희열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현

변론종결 2024. 11. 28.

판결선고 2024. 11. 28.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가단11754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22. 10.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229,251,11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9,251,1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차256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7. ‘C는 E 주식회사 및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지급명령은 2011. 7.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차3555호로 ‘C는 E 주식회사 및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8.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1. 1. 7. 그 신청대로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21. 1. 13. C에게 송달된 후 2021. 1. 28. 확정되었다.

다. C의 부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2. 10. 18. 사망하여 배우자 K가 3/9 지분의, 자녀들인 L, 피고, C가 각 2/9 지분의 각 비율로 D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위 상속인들 사이의 2022. 10. 18.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가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되어 피고가 2023. 3.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23. 3.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J조합 앞으로 채무자 M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C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무자력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3. 3. 9. 기준 시가는 1,031,63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수액은 624,526,027원[= 200,000,000원 + 2011. 6. 28.부터 2021. 1. 13.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82,246,575원(= 200,000,000원 × 20% × 3,488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21. 1. 14.부터 2022. 10. 18.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2,279,452원(= 200,000,000원 × 12% × 643일/365일)]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되는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C가 2022. 10. 18.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을 포기하여 피고에게 분할하기로 협의하는 방법으로 무자력 상태에서 적극재산을 처분하였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계약은 C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자신의 상속 지분을 훨씬 초과하는 14억 상당의 재산을 이미 증여받았는바, 이를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C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 될 뿐 망인의 사망으로 C가 추가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으로 C가 자신의 적극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또는 성립범위를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따라서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N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의 생전 유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일 뿐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이 반복되어 피고를 선의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계약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J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가액배상만이 가능하다.

2)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3. 3. 9. 기준 시가는 1,031,630,000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는 229,251,111원[$= 1,031,630,000\text{원} \times 2/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 지분의 가액)]이 된다.

3) 나아가 보건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이 사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를 훨씬 상회하는 624,526,027원에 이르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분할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229,251,111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계약은 229,251,111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29,251,1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박성규, 판사 설정은

별지